

## 논활용(논이모작) 직접지불사업 Q&A

### ▶ 지급대상 농지

#### ☞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은?

☞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서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(畓)

중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
사실상 '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 중 "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논(畓)"이면 지급대상 농지에 모두 포함됨

다만,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,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, 부정수급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,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, 무단점유 농지 등은 제외될 수 있음

#### ☞ 동계작물을 논(畓)이 아닌 밭(田)에서 재배·수확하는 경우 논활용(논이모작) 지급 대상인지?

☞ 논활용(논이모작) 직불금은 논을 활용·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·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을 증진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므로 밭에서 이모작 재배를 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#### ☞ 논활용 직불금을 신청 후(2.1) 자격요건 유지 기간(5.31) 이전에 농지정보가 변동(분할·합필)된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?

☞ 당초 신청된 필지(면적)에 한하여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및 직불제 등록사항 변경 시 지급 가능  
다만, 당초 신청된 필지(면적)가 아닌 필지 분할·합병으로 늘어난 면적은 지급 불가하며 자격검증(대량검증)을 통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

#### ☞ 자격요건 유지 기간(5.31) 이후에 농지정보가 변동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인지?

☞ 자격요건 유지 기간 이후 농지정보가 변동(분할·합필)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며, 자격요건 유지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

#### ☞ 타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논을 일정기간(동계)만 임차하여 보리나 밀,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논활용(논이모작) 직불금 지원 대상인지?

☞ 하계작물을 재배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동계 식량·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한시적(해당연도 10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의 기간)으로 임차(사용차)하여 경작하는 경우 지원 가능

다만, 농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농지를 재임차(전대)한 경우는 지급 불가함

## ▶ 지급대상 농업인

### ☞ 지급대상 농업인의 기준은?

☞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1천㎡(0.1ha) 이상 지급대상 농지(논)에서 해당 기간(전년 10월~6월까지) 동안 논활용(논이모작)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

- ①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
-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'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' 요건에 충족하는 자

### ☞ 직불금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(사망, 고령, 질병 등)로 경작을 하지 못해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해당농지를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?

☞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고령, 질병,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고, 자격요건\*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계 가능

\* 사유 발생 시점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계속해서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(형제자매는 불가)

### ☞ 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였으나 신청 후 도시지역으로 주소 변경(전출)이 된 경우 지원 대상인지?

☞ 신청 후 주소 변경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도시로 변동 된 경우 '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' 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(미충족 시 지원 대상 미포함)

### ☞ 안동시 송현동(도시지역)에 거주하는 A가 예천군에 8천㎡, 영양군에 2천㎡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고 있다면, 논활용(논이모작) 직불금 지급대상 인지?

☞ A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므로 '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' 요건을 충족하여야 되나, 같은 시·군·구(연접포함)에 1만㎡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지급 불가

### ☞ 안동시 송현동(도시지역)에 거주하는 A가 2년 전부터 안동시 길안면에 1천㎡ 농지를 논이모작 농업에 이용하고 있다면, 논활용(논이모작) 직불금 지급대상 인지?

☞ A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'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'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급 가능 (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·구에 두고 해당 시·구에 소재한 1천㎡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충족)

## ▶ 지급대상 품목

### ☞ 논활용(논이모작)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은?

☞ 논(畓)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(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)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

겉보리, 쌀보리, 맥주보리, 밀, 호밀, 귀리, 감자 등의 식량작물과 청보리,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(알팔파, 레드클로버 등)

\* 이모작: 같은 농지에서 두 종류의 농작물을 1년 중 서로 다른 시기에 재배하는 토지의 이용법

\* 시설: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,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것

### ☞ 녹비용으로 사료작물을 재배 시 논활용(논이모작)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?

☞ 논활용(논이모작) 직불금은 식량·사료작물 재배를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녹비용으로 재배한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

### ☞ 벼를 심은 논에 이모작으로 마늘, 양파를 심은 경우 논활용(논이모작) 직불금 지원 대상인지?

☞ 논활용(논이모작) 직불금은 식량·사료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마늘, 양파와 같은 채소작물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님

### ☞ 하계에 벼(하계작물)를 재배하지 않고 사료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한 논에 동계 논이모작으로 작물을 재배한 경우도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?

☞ 전작(하계)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거나, 휴경을 한 논에서도 동계에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한 경우 직불금 지급

### ☞ 전년도(10월~12월)에 파종하지 않고 봄에 파종한 감자 사료작물 등의 경우도 논활용(논이모작) 직불금 지원 대상인지?

☞ 파종일자와 상관없이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·사료 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경우는 춘파라 할지라도 지원 가능

### ☞ 고구마, 콩, 팥 등의 식량작물은 지원 대상인지?

☞ 논이모작은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고구마, 콩, 팥 등은 6월까지의 수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지원 대상에 미포함